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가단1433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3. E

4. F

피고 1, 3, 4의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피고들과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8,93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33,6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G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0107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5. “G은 H에게 4,008,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H는 2021. 3. 12.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G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21. 3. 23. H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G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과 G의 어머니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7. 11. 1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과 G이 있었다.

라. 피고들과 G은 2017. 11. 17.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 16.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3. 12.에 각 2017. 1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102,672,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G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4,008,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G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G은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G이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5. 6.경 J에게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고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소비함으로써 자기 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20,000,000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G이 피고 D로부터 위 J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필요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J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 D 스스로도 2023. 1. 20.자 답변서에서 G이 설정한 J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금원을 망인이 아니라 피고 D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G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20,000,000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4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K조합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이후인 2018. 4. 23. 피고 D가 위 근저당권에 대한 확정채무를 면책적 인수하여 2018. 4. 25.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과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으로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008,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채권액이

11,917,550원[=4,008,391원+4,008,391원×20%×(9+316/365), 원 미만 버림]에 이르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102,672,2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법원의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K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58,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 가액 가운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은 8,934,440원[=(102,672,200원-58,000,000원)×1/5]이 된다.

3) 결국,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 8,934,440원의 한도 내로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8,93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가액배상금 2,233,610원(=8,934,440원×1/4)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별지

목 록

- 1. 경북 칠곡군 L 대 467㎡
- 2. 경북 칠곡군 M 대 9㎡
- 3. 경북 칠곡군 N 대 249㎡. 끝.

